

<별첨양식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5년 성남문화재단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갑) : 성남문화재단
- 제조사·공급사(을) :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的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的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3,564,000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5년 1월 9일

“갑” 성남문화재단 (인)

“을”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인)

<별첨양식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5년 성남문화재단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갑) : 성남문화재단
- 제조사·공급사(을) : (주)소만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的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的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3,319,83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5년 1월 9일

“갑”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인)

“을” 소만사 (인)

<별첨양식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5년 성남문화재단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갑) : 성남문화재단
- 제조사·공급사(을) : (주)닥터소프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的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的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3,447,29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 5년 | 월 9 일

“갑” 성남문화재단 (인)

“을” (주)닥터소프트 홍 윤 환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5년 성남문화재단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갑) : 성남문화재단
- 제조사·공급사(을) : (주)컴트루테크놀로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的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的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5,329,92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5년 1월 9일

“갑” (발주기관명)

“을” (제조사·공급사명)

성남문화재단 (인)

(주)컴트루테크놀로지 (인)

<별첨양식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5년 성남문화재단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갑) : 성남문화재단
- 제조사·공급사(을) : 삼정데이터서비스(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的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的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3,850,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5년 1월 9일

“갑” 성남문화재단

(인)

“을” 삼정데이터서비스(주)

(인)

<별첨양식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5년 성남문화재단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갑) : 성남문화재단
- 제조사·공급사(을) : (주)원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的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的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6,173,200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5년 1월 9일

“갑” (발주기관명) (인) 
성남문화재단
“을” (제조사·공급사명) (인) (주) 원스

<별첨양식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5년 성남문화재단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갑) : 성남문화재단
- 제조사·공급사(을) : 어울림정보기술(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的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的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11,484,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5년 1월 8일

“갑” (발주기관명) 성남문화재단 (인)

“을” (제조사·공급사명) 어울림정보기술 (인)



<별첨양식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5년 성남문화재단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갑) : 성남문화재단
- 제조사·공급사(을) : (주)트리니티소프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的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的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4,543,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5년 01 월 07 일

“갑” (발주기관명)

성남문화재단

(인)

“을” (제조사·공급사명) (주)트리니티소프트



<별첨양식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15년 성남문화재단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갑) : 성남문화재단
- 제조사·공급사(을) : (주)웨어밸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 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的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的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5,940,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5년 1월 9 일

“갑” 성남문화재단 (인)

“을” (주)웨어밸리 (인)